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0.0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호, 2023. 00. 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식품

다. 삭제

라.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마.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바.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천 연식물보호제

사.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제제품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거. 삭제

너. 「낙농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제품

더. 삭제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서 정한 물자를 생산·가공·보관·판매·제재(製材) 또는 수출·수입하는 업체

나. 제2호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

제3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산림청장

가. 제2조제1호아목, 자목에 따른 임산물, 목제품

나. 제1호 가목의 물자를 생산·가공·보관·판매·제재 또는 수출·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업체

2. 시·도지사

가.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거목, 너목에 따른 양
곡, 농산물, 식품, 축산물, 사료, 농약과 천연식물보호제, 비료, 유제
품

나.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업체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
의 구분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는 정보시스템(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해제·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부 칙 <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 12. 29.>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 5. 1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 2012.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호, 2023. 00. 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0조제0항 관련)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자원조사 실시기관	자원조사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제2조제2호나목의 관리대상업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가. 한국농어촌공사 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다. 한국마사회 2. 제2조제2호나목의 관리대상업체 중 그 밖의 특별법인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NH농협은행
시·도지사	제2조제1호의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관리대상업체
산림청장	제2조제1호의 관리대상물자 중 아목의 임산물 가. 목재[국유림 중 이미 벌채허가를 받은 임지(林地) 안의 입목(立木)과 임지 안의 벌채된 원목]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보고서 - 삭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지정 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물자의 소유 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물자의 품목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임무의 내용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인수 장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자
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직인

※ 이 고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고지서에 기재된 임무를 해당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자르는 선 (간 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 인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 장소	
※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업체명	주소	물 자의 소유 자 또는 업 체 의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물 자의 품 목	규 격 또 는 구 조	단 위	수 량	임무고지 내용			임무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확인
									임무의 내용	사용기관 (인수기관)	인도·인수 장소		

380mm×268mm(인쇄용지(2급) 80g/㎡)

비 축 명 령 서

지정 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 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물자의 품목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비축 장소	비축기간	비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직인

※ 이 비축명령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물자를 성실하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비축해야 합니다.

..... 자르는 선 (간 인)

제 호				
비축명령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 장소	
※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